

의안번호	2208704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4.
추계번호	25F130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
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가 및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.41억원, 2028년 1.46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4.3억원(연평균 1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 (안 제13조제2항제1호의 3)	-1.41	-1.44	-1.46	-4.31	-1.44
- 취득세	-0.28	-0.28	-0.28	-0.84	-0.28
- 재산세	-1.13	-1.16	-1.18	-3.47	-1.1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2항제1호의3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제2항제1호의3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(취득세)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(0.28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한국농어촌공사의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무상양여 토지 등이 202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(재산세)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재산세 납부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2.4%)를 적용하여 감면율(50%)을 반영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되는 토지¹⁾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
1)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(조성토지의 처분 특례)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

○ 취득세 감면율: 50% 감면

– 현재 재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2022.12.31.일 이전까지는 재산세 50% 감면

□ (추계방법)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
○ (취득세)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(0.28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– 한국농어촌공사의 향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무상양여 토지 등이 202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
[표 2]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
취득세 감면실적	1.04	0.94	0.27	0.28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자료

○ (재산세)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재산세 납부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2.4%)를 적용하여 감면율(50%)을 반영하여 추계

–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은 2021~2022년은 재산세 감면 50% 적용, 2023년 이후 감면 미적용

– 2021~2024년 감면 미적용 재산세 납부실적은 2021년 2억원에서 2024년 2.1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.4%

[표 3]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
재산세 납부세액	1.00	1.02	2.13	2.15
재산세 납부세액 환산액 ¹⁾ (‘21~’22 감면 미적용)	2.00	2.04	2.13	2.15

주: 1) 2021~2022년 재산세 50% 감면이 적용되어 감면 미적용 시 납부세액으로 환산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자료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가 및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.41억원, 2028년 1.46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4.3억원(연평균 1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무상양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산세 추가 감면 (안 제13조 제2항 제1의3호)	-1.41	-1.44	-1.46	-4.31	-1.44
- 취득세	-0.28	-0.28	-0.28	-0.84	-0.28
- 재산세	-1.13	-1.16	-1.18	-3.47	-1.1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